

※ 본 안내문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분양승인 전 작성되어 실제와 다를 수 있으므로, 청약접수 전 반드시 입주자모집공고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해당기관에서 특별공급 대상자(당첨예정자 및 예비대상자)로 선정·통보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해당 특별공급 신청일에 인터넷 청약의 방법으로 한국부동산원 청약홈(www.applyhome.co.kr)에서 청약 신청하여야 합니다.
- 예비대상자도 해당 신청일에 청약신청을 하여야 예비대상자의 지위가 될 수 있으며, 청약 미신청 시 포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사업주체는 선정·통보된 특별공급 대상자에게 특별공급 청약 접수와 관련하여 별도의 개별 안내를 하지 않으며, 특별공급 대상자는 청약 신청일에 미접수로 받는 불이익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부적격자는 해당기관의 추천여부, 한국부동산원 청약홈(www.applyhome.co.kr) 인터넷 청약접수 및 동·호수 배정 여부와 무관하게 계약체결이 불가하며, 당첨일로부터 최대 1년간 다른 분양주택(민간사전청약주택 및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신청자가 동 안내문 및 입주자모집공고의 내용을 미숙지하고 신청하여 받는 불이익에 대하여 사업주체는 일체 책임지지 아니 하므로, 해당 기관에서는 특히 신청자격 및 공급대상에서 제외하는 자를 충분히 안내하고 재검증하여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1. 공급 개요

- 공급 위치 : 경기도 평택시 세교동 725번지 일원 (평택영신지구 도시개발사업 2BL)
- 공급 규모 및 내역 : 아파트 지하 2층 ~ 지상 27층 / 12개동 / 총 1,098세대 및 부대복리시설

약식표기	84A	84B	84C	84D	116	합계
공급세대수	452	208	168	122	148	1,098

구분		84A	84B	84C	84D
기관추천 특별공급 주택형 및 세대수	국가유공자 등	11 (55)	5 (25)	4 (20)	3 (15)
	장기복무 제대군인	5 (25)	3 (15)	2 (10)	1 (5)
	10년 이상 장기복무군인	7 (35)	3 (15)	2 (10)	2 (10)
	중소기업 근로자	8 (40)	4 (20)	3 (15)	2 (10)
	장래인	경기도	8 (40)	3 (15)	2 (10)
		서울특별시	3 (15)	1 (5)	1 (5)
		인천광역시	3 (15)	1 (5)	1 (5)

※ 85㎡이하 주택 건설량의 10% 범위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

- ※ 상기 주택형 및 세대수는 사업추진 또는 인·허가 과정에서 변동될 수 있으니, 추후 입주자모집공고문을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상기 빨간색 글꼴 세대수는 당첨예정자, 괄호 안의 세대수는 예비대상자 세대수입니다.

2. 분양가 및 분양조건 : 현재 분양승인 전으로 자세한 사항은 분양승인 후 입주자모집공고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분양일정 (예정)

구분	입주자모집공고	특별공급 접수일	당첨자 발표일
예정 일자	2026.10.16.(금)	2026.10.26.(월)	2026.11.03.(화)

- ※ 서류접수 기간, 정당계약 체결일 등 공급일정은 추후 입주자모집공고를 필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상기 일정은 예정사항으로 사업추진 또는 인·허가 과정에서 변동될 수 있으니, 추후 입주자모집공고문을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입주자모집공고를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 등에 대하여 사업주체 및 공사사는 일체 책임을 지지 아니 하오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4. 청약방법

-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홈페이지(www.applyhome.co.kr)에서 인터넷 청약 신청이 원칙입니다.
→ 온라인(PC·모바일)접수 : 특별공급 청약일 09:00~17:30까지
- ※ 특별공급은 고령자 및 장애인 등 인터넷 청약이 불가한 경우에 한해 견본주택 현장접수가 가능합니다.(서류미비 시 접수불가)
→ 현장접수 : 특별공급 청약일 10:00~14:00까지(방문 시 구비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입주자모집공고 이전 준비사항

- 주택청약종합저축 예치금 충족 - 입주자모집공고 당일까지 충족
- 청약예금 주택규모 변경 - 입주자모집공고일 전일까지 변경 (전용85㎡초과 청약예정 시, 해당 면적의 하위면적 모두 청약 신청 가능)
- 청약예금 지역간 예치금액 차액 충족 - 청약 접수 당일까지 충족 (전입 등의 사유 시)
- 종전통장(청약예금, 청약부금, 청약저축)에서 종합저축으로 전환 - 입주자모집공고 전일까지 (단, 전환개설한 날을 기준으로 순위산정)

5. 기관추천 특별공급 자격요건

구분

내용

공급
기준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에 의거 한 차례에 한정하여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공급합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 제1호 및 제8호의2에 해당하는 경우는 특별공급 횟수 제한 제외)

•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 기준으로 공급하므로 1세대 2인 이상이 청약하여 한 명이라도 당첨될 경우 중복청약으로 모두 부적격 처리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의2에 따라 부부는 당첨자발표일이 같은 주택에 대해 각각 청약할 수 있으며, 중복당첨 시 다음과 같이 처리합니다.

구분		처리방법
당첨자발표일이 다른 주택		당첨자발표일이 빠른 당첨건은 유효하며, 당첨자발표일이 늦은 당첨건은 부적격 처리
당첨자 발표일이 같은주택	부부가 중복당첨된 경우	접수일시가 빠른 당첨건은 유효하며, 접수일시가 늦은 당첨건은 무효 처리 ※ 분 단위 접수일시가 동일한 경우, 연령(연월일 계산)이 많은 청약신청자의 당첨건이 유효
	부부 외 세대원이 중복당첨된 경우	모두 부적격 처리

• 과거에 주택을 소유하였더라도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이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무주택
요건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 다음 각 목의 사람(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세대의 구성원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2호의3 및 제4호)

무주택세대구성원

가. 주택공급신청자

나.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

다.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예 : 부·모, 장인·장모, 시부·시모, 조부·조모, 외조부·외조모 등]
-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라.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 이하 같음) [예 : 아들·딸, 사위·며느리, 손자·손녀, 외손자·외손녀 등]
-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마.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
- 주택공급신청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전혼자녀 등
※ 배우자 분리세대의 경우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도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야 함.

※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것으로 보는 경우인 “소형·저가주택등”은 2024.12.18.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제9호 “주택 또는 분양권등”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주택 또는 분양권등’

- 아파트 주거전용면적 60㎡ 이하로서 주택가격이 1억원(수도권은 1억 6천만원) 이하인 주택 또는 분양권등

- 비아파트 주거전용면적 85㎡ 이하로서 주택가격이 3억원(수도권은 5억원) 이하인 주택 또는 분양권 등

※ 주택가격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 제1호 가목2)의 기준에 따릅니다.

입주자
자촉
요건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청약통장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함. 단,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등 제외

① 청약예금 : 해당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분

② 청약부금 :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납부한 월납입인정금액이 예치금액 이상인 분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형에 한함)

③ 주택청약종합저축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분

구분	특별시 및 광역시를 제외한 지역	그 밖의 광역시	특별시 및 부산광역시
전용면적 85㎡ 이하	200만원 이상	250만원 이상	300만원 이상

※ 가입기간 및 예치금액 인정 등 판단의 기준일은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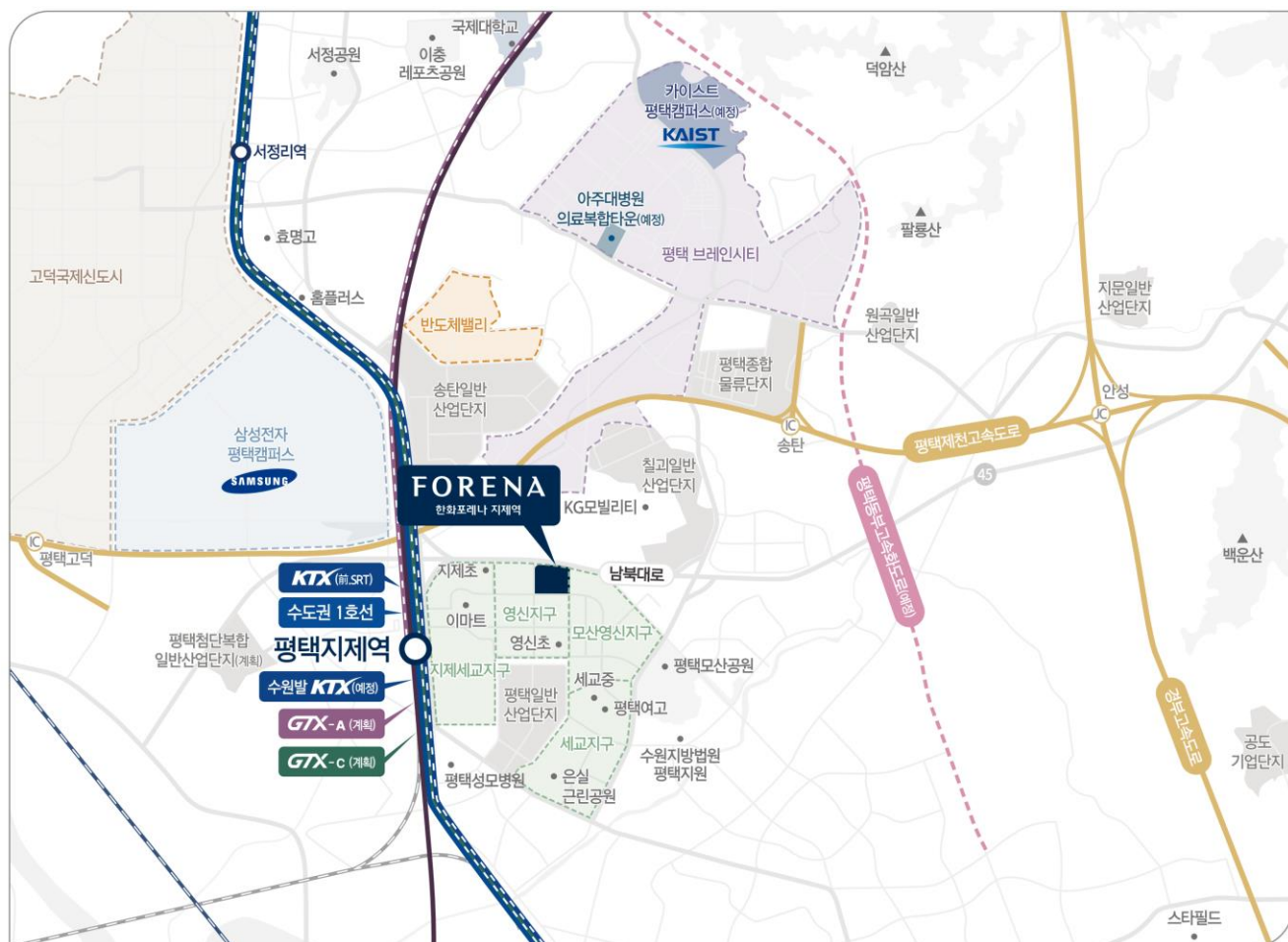
※ 청약통장 예치기준금액은 청약신청자 본인의 주민등록표등본상 거주지 기준으로 예치금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6. 당첨자 선정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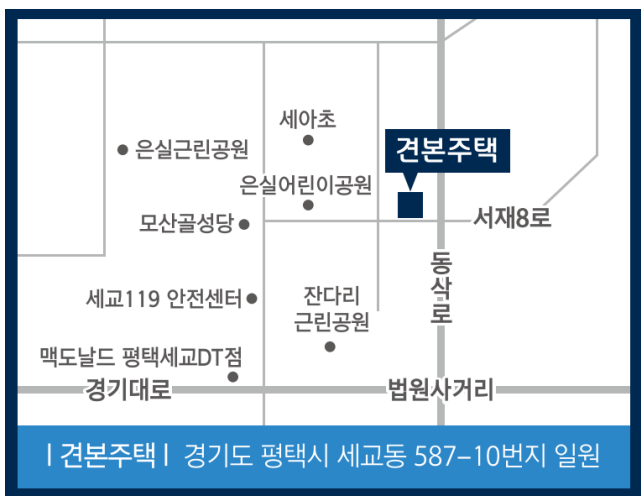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 해당기관에서 특별공급 대상자(당첨예정자 및 예비대상자)로 선정·통보된 분
 - 당첨예정자 : 해당 기관에서 '당첨자'로 선정·통보한 분으로서 다른 결격사유가 없을 경우 청약 후 '당첨자(입주자)'가 되는 분
 - 예비대상자 : 해당 기관에서 '예비자'로 선정·통보한 분으로서 청약하여 특별공급 미달 시 추가로 '당첨자(입주자)' 또는 특별공급 예비입주자로 선정될 수 있는 분
- ※ 예비대상자는 특별공급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이 있는 경우 다른 특별공급 신청자 중 선정되지 않은 자를 포함하여 무작위 추첨으로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를 선정하므로,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에 의거하여 관계기관의 장이 정하는 우선순위에 따라 공급합니다.
- 기관추천 특별공급의 경우 자격요건을 갖춘 자는 먼저 해당기관에 신청하여야 하며, 해당기관에서 선정하여 당사에 통보한 자만 청약 신청 가능하며, 해당기관에서 특별공급대상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해당 신청일에 인터넷 청약 신청의 방법으로 신청하여야 합니다. [미신청시 당첨자선정(동·호배정)에서 제외되며 계약불가]
- 기관추천 특별공급 당첨자 선정은 해당 추천기관에서 자체 기준에 의거 대상자를 확정하여 사업주체에 통보되므로 사업주체 및 주택청약업무 수행기관(한국부동산원)은 선정에 관여하지 않습니다.
- 주택의 동·호배정은 동별·층별 구분 없이 한국부동산원 전산 프로그램에 의해 일반공급 당첨자와 함께 주택형별로 무작위 추첨으로 결정되며, 당첨 동·호수의 변경이 불가능하고, 사업주체는 동·호수 배정에 관여하지 않습니다.
- 특별공급 당첨자로서 동·호수를 배정받고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에도 당첨자(1회 특별공급 간주 등)로 판단됩니다.
- 당첨자 발표 및 동·호수 배정은 당첨자발표일에 한국부동산원 홈페이지에서 개별 조회 가능합니다. (개별통지 불가, 본인 확인)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청약신청자 및 그 세대에 속한 자 중 아래의 경우 최하층 우선배정을 신청할 수 있으나, 경쟁이 있을 경우 배정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 ①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 65세 이상인 자
 - ②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이 발급된 자
 - ③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미성년자인 세 명 이상의 자녀(태아 인정하지 아니함)를 둔 자가 있는 경우

7. 기타 유의사항

- 기관추천 특별공급 당첨 예정자는 당첨이 확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신청하는 것이므로, 다른 특별공급(다자녀가구, 신혼부부, 노부모부양, 생애최초) 및 일반공급에 중복신청이 불가합니다. 단, 예비대상자는 일반공급에 중복신청이 가능하나, 특별공급 청약 미달로 추가 추첨하여 당첨자로 되었을 경우 일반공급 신청은 무효처리 됩니다.
- 신청 접수 시 신청자격을 확인(검증)하지 않고, 당첨자가 청약 신청 시 기재한 사항만으로 당첨자를 선정하므로 당첨자에 한해 신청자격 확인 서류를 통해 신청자격을 검증하며 확인 결과 부적격자임이 판명될 경우에는 당첨 및 계약취소, 통장 효력 상실, 당첨자 명단관리 등의 불이익이 발생되며, 이는 신청자 본인의 책임이오니 본인의 신청자격을 정확히 확인하여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 사업주체에 통보된 대상자는 통지 시 기재된 주택형으로 한국부동산원에 신청내역을 등록함에 따라 청약자 임의로 주택형 변경 등 추천내역과 상이하게 청약접수가 불가합니다.
- 주택소유여부 판단 시 국토교통부 전산 검색 결과에 따른 세대구성원의 주택소유여부 등에 따라 부적격 통보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청약 시 신청자의 착오로 인한 잘못된 신청에 대해서는 수정 접수(주택형 변경 등)가 불가하며, 이에 대한 책임은 청약 신청자에게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라며, 신청 접수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고 취소나 정정을 할 수 없습니다.
- 기관추천 특별공급 물량에 따라 일반공급 물량이 확정되므로 각 기관에서 통보한 사항(주택형 등)의 변경은 절대 불가합니다.
- 청약, 전매 및 재당첨제한 등에 관한 사항은 향후 주택법 및 관계법령 개정내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해당 안내문은 고객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추후 입주자모집공고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관계법령과 상이할 경우 관계법령이 우선합니다.
- 공급금액, 공급대상 주택관련 등 세부사항 및 유의사항은 분양승인 전 기관추천 특별공급 안내를 위한 예정 사항으로 향후 분양승인에 따라 다소 변동될 수 있으니 분양승인 이후 입주자모집공고를 필히 확인하여 불이익이 발생치 않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자가 상기 내용 및 입주자모집공고를 미숙지하고 신청하여 받는 불이익은 당사에서 책임지지 않으므로, 해당 기관에서는 위 사항을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주시기 바라며, 해당기관에서 특별공급 대상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특별공급 신청일에 신청하여야 당첨자로 확정됨을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신청시 당첨자 선정(동·호 배정) 및 계약불가]



- 상기 위치도는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실제와 상이할 수 있습니다.
- 본 안내문의 현황, 개발계획은 관계 기관의 홈페이지 등을 참조하여 작성된 것으로 당사와는 무관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한화포레나 지제역” 대표번호(1661-109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